

제 1316 호
1986.9.26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문부
 편집인 : 영문부 관 이영우
 약칭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1-6111-3
 화 : 735-3337

신경	공보관	김일기	간사	공보부장	김영우
접수일자	1986.9.26	시	공보	제도계장	김영우
제과	김일기	시	공보		

시보

차례

◎ 고 시	
제 690 호 :	'86 서울특별시제 1 회 추가경정예산 3
제 691 호 :	사료성분등록변경 및 취소 3
제 69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5
◎ 공 고	
제 527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공표 6
제 530 호 :	도시계획안공고 7
제 534 호 :	'86 년 도 서울특별시 건축상용도 작품모집 7
제 535 호 :	K·S 표시정지처분공고 8

(이면계속)

H·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구 공 고	
동대문구제 49 호 : 상설시장개설허가취소	9
◎ 사 령	
◎ 출 석 통 지	
○ 관악구인사위원회	9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690 호

’86 서울특별시제 1 회 추가경정 예산 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86년
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의 세입, 세
출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은 지방
자치법제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6. 9. 26

서울특별시 장

○ 특별회계

- 주택개발비 : 52,743백만원
- 유료도로비 : 16,671 "
- 특정건축물정리비 : 16,110 "
- 육동, 신정동개발사업비 : 476,588백만원

- 토지구획정리사업비 : 127,472백만원
- 올림픽사업비 : 21,000 "
- 수도사업 : 227,337 "
- 병원사업 : 17,341 "
- 새마을조성사업비 : 13,363백만원

○ 기 금

- 도시재개발사업기금 : 11,947백만원
- 재해구호사업기금 : 1,000 "

◎ 서울특별시고시제 691 호

사료성분등록변경및취소

사료관리법 제 22 조제 5 호의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변경 및 취소사
항을 변경과 같이 고시한다.

1986. 9. 26

서울특별시 장

1. 사료성분 등록현황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또는 용도		성분량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4-134	전국매립 사료공업 (주) 315	자양동	김삼봉	양극용 배합 사료	특수농축사료(1)	착유농축사료 1 (비유량 10 kg이하)	변경없음	
4-135					특수농축사료(2)	착유농축사료 2 (비유량 13 kg이하)		
4-136					특수농축사료(3)	착유농축사료 3 (비유량 16 kg이하)		
4-137					특수농축사료(4)	착유농축사료 4 (비유량 18 kg이하)		
4-138					특수농축사료(5)	착유농축사료 5 (비유량 20 kg이하)		
4-139					특수농축사료(6)	착유농축사료 6 (비유량 25 kg이하)		
4-140					특수농축사료(7)	착유농축사료 7 (비유량 30 kg이하)		
4-141					특수농축사료(8)	착유농축사료 8 (비유량 35 kg이하)		
4-142					특수농축사료(9)	착유농축사료 9 (비유량 40 kg이하)		

2. 사료성분 등록취소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료의 종류	사료의명칭 또는 용도	성분량 (%)						비고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4-125	전국매립 사료공업 (주)	자양동 315	김삼봉	양극용 배합사료	착유우농축	이상 12.0	이상 2.5	이하 10.0	이하 10.0	이상 0.4	이상 0.3	

◎ 서울특별시고시제 69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660(86.9.10)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다.

가. 도로 표시

번호	구분	종급	유별	목원(㎡)	연장(㎞)	시 점	중 점	비
1.	건설	소로	3류	6	189	은평구녹번동 19-20	죽림동 21-65	

첨부: 도면자 1부: 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527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 제 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인가 86-1-21 호로 설치 인가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폐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

1. 행정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8. 9. 26

서울특별시청

1. 인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방문 통지를 생략하고 인공으로 가한다.

서울특별시청

공 고 및 공 람

- 가) 사용개시 년월일: 1988. 10. 1
- 나) 배수구역: 하수관망도 참조
- 다)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 선릉동 1411-69 ~ 1421-1
 - 신림동 1412-2 ~ 1412-65
 - 신림동 1413-1 ~ 141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림 5 동 1432-164 ~ 1432-163 • " 1432-84 ~ 1432-94 • 신림 1 동 1627-35 ~ 1627-28 • " 1628-6 ~ 1620-1 • " 1619-30 ~ 1619-22 • " 1619-22 ~ 1619-1 • 신림본동 409-4 ~ 409-16 • " 409-4 ~ 409-172 • 남현동 602 의 171 ~ 270 간 • 봉천 7 동 1626 의 35 ~ 1624 의 1 • 봉천 7 동 1002 의 1 ~ 1599 의 4 • 신림 3 동 650 의 77 ~ 650 의 31 • 봉천본동 907-14 ~ 907-2 • " 925-35 ~ 925-19 • " 944-27 ~ 948-8 • " 899-29 ~ 899-30 • 봉천 10 동 885-10 ~ 885-16 • 봉천 1 동 969-43 ~ 970-13 • 봉천 10 동 888-33 ~ 887-2 호간 • " 892-7 ~ 892-9 호간 • 봉천 6 동 1666-1 ~ 1666-39 호간 • " 1666-1 호앞 • " 1666-48 ~ 1666-53 호간 • 신림 3 동 610-96 ~ 610-47 호간 • " 610-209 ~ 610-220 호간 • 봉천본동 902-10 ~ 905-6 • " 958-22 ~ 27 • 봉천 11 동 196-241 ~ 249 • " 196-241 ~ 244 • " 196-23 ~ 11 • " 196-11 ~ 40 • 봉천 7 동 1958-7 ~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천 9 동 산 102-38 일대 • 신림 4 동 463-5 ~ 463-41 • 봉천 6 동 21-25 ~ 23-16 • 신림 3 동 658-1 ~ 661-22 • 신림 8 동 542-1 ~ 542-8 • " 542-24 ~ 542-1 • 신림 11 동 1474 의 14 ~ 1474 의 1 • " 1474 의 10 ~ 1474 의 14 • " 1474 의 10 ~ 1474 의 20 • " 1474 의 20 ~ 1483 의 14 • " 1484 의 6 ~ 1474 의 10 • " 1484 의 6 ~ 1484 의 4 • " 1565 의 13 ~ 1565 의 7 • " 1680 의 26 ~ 1680 의 23 • 신림 5 동 1436 의 23 ~ 1437 의 23 • 봉천 9 동 940 의 5 ~ 937 의 6 • 봉천 9 동 940 의 5 ~ 940 의 14 • 봉천본동 926-13 ~ 926-22 • 신림 11 동 596-5 ~ 595-2 • 봉천 10 동 871-32 ~ 871-16 • " 871-6 ~ 871-14 • 신림 4 동 479-14 ~ 3 • 신림 8 동 533-25 ~ 16 • 신림 11 동 1475-20 ~ 12 • " 1475 의 6 ~ 19 • " 1680 의 21 ~ 25 • " 217 의 12 ~ 26 • 신림 3 동 652 의 164 ~ 654 의 3 • 신림본동 86 의 35 ~ 87 의 1 • 봉천 6 동 100-113 ~ 100-455 • " 100-75 ~ 100-202 • " 100-105 ~ 100-112
--	---

1. 상의명칭 : 1986년도(제6회)서울시 건축상
2. 상의종류
 - 금상 (1점), 은상 (3점), 동상 (3점) 및 장려상 수점
 - 시상은 건축가에게 상패와 소정의 부상이 주어지며, 건축주에게는 우수건축물 표식패가 기증됨
3. 응모대상
 - 1985-1986년에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서울시소재 건축물
 - 건축사무소 등록을 필한 건축사 또는 한국 건축가협회 회원의 작품
4. 작품제출요령
 - 소정양식의 응모원서
 - 규격 90cm×90cm의 판넬 2~4개 제작 제출
(건물개요, 완공사진, 부사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수단면도, 부설예술품 설치설명도, 조경설명도등 필요한 사항을 적의 표기할것)
 - 모형제출은 임의(권장사항)
5. 작품제출기간 및 장소
 - 1986.12.1 ~ 12.30
 -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 (731-6381-4)
6. 작품심사
 - 우리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중 3인

과 추후별도 선정케될 사계전문가 3인의 위원등 7인의 심사위원회가 심사

- 심사기간은 1987년 1월중
- 수상대상 선정중 신인의 발굴과 격려의 뜻으로 만 35세이내의 설계자에 대하여 장려상을, 또한 건축물 부설 예술장식품 설치에 대하여 장려하여야 할 건축물 및 예술장식품에 대하여 특별부문상을 따로 마련하여 시상할 수 있음.
- 7. 특 전
 - 수상작가에 대하여 우리시 발주 건축공사에 관련한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설계용역을 수탁케 지원하고,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공고제 535 호

K.S 표시, 점지처분공고

K.S 표시 점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6. 9. 26

서울특별시

1. 업체명	(주)나미 제2공장	중랑구로 코리아
2. 대표자	송삼석	조길
3. 소재지	서울시성동구성수2가32-1	서울시성동구독산동 1001
4. 규격번호	KSG 2617	KSG 2617
5. 규격명	샤프 연필	샤프 연필
6. 종류등급	뉴크식	뉴크식
7. 처분사유	KS규격 미달	KS규격 미달
8. 처분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별도 해제시 까지)	

구 공 고

◎ 동대문구제 49 호

상설시장 개설허가 취소공고

시장법 제 13조 제 2항에 의거

음과 같이 상설시장 개설 허가번호
소처분허가번호 제 20 조 제 1항
3호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6. 9. 26.

동대문구청장

허가번호	허가일자	시장명칭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대응
64 호	1986.9.9	금성시장	지광산업 (주)	면목동 135-1	최형주	관리대상 물 소멸	허가취소

사 령

◎ 1986년 9월 16일자

령제 416 호

서울특별시 관공서 회계과장
서 기 관

이 병 규

지방서기관에 임함

대 동 념

중앙운동장관리사업소장에 보함.

서울특별시장

◎ 1986년 9월 23일자		령제 417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급
차 재 두	한강 관리사업소 파견 (86.9.23 - 86.12.31)	종합건설본부	지방통신원
박 계 순	한강 관리사업소 파견 (86.9.23 - 86.12.31)	종합건설본부	지방통신원
		령제 418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급
이 용 국	원에 의하여 그직 관함	경 찰 국	지방통신원
서울특별시장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박 양 님	소 속 관 약 구 칭
	본 적	전북완주군봉동읍장거리 714	
주 소	경기도부천시역북동 78-2 삼익(A) 지하 201호		
출 석 이 유	인사위원회 출석진술		
출 석 일 시	1986년 10월 15일 10시 00분		
출 석 장 소	관악구청 기획상황실		
유 의 사 항	1. 진술에 의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하기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자리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86년 월 일 관악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박 양 님 귀하			
.....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관 약 구 칭
	본 적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것을 포기합니다. 1986년 월 일 성 명 인 관악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